2023년 11월 15일 개정

KB운전자보험

KB운전자보험

□ KB운전자보험 보통약관

1. 보상 내용

- (1) 보험회사는 운전자(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북한지역을 포함)에서 자동차(원동 기를 붙인 자전거를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에게 생긴 손해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2천만원을 한도로 드립니다.
 - ② 운전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실제 지급한 비용을 100만원 한도로 드립니다.
 - ③ 운전자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1년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드립니다.
 - ④ 운전자가 부상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의 후유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드립니다.
- (3) 동일한 사고로 전항의 보험금을 두가지 이상 드려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합친 금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드릴 경우에는 이미 드린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전쟁, 변란, 폭동, 그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 ②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 ③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 ④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 ⑤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 ⑥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2) 위 '(1)'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를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 이 약관 '1. 보상내용 (2) ① 및 ②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3)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책임기간 및 보험 약관의 교부

- (1) 책임기간
 - ①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2) 보험약관 등의 교부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①'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4. 청약 철회

- (1)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전문보험계약자(*1)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2.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1)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제2조 제 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4)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5)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 다.
- (6)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5.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운전자, 보험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가 보험사고가생긴 후일지라도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드렸을 때에는 운전자는이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6. 계약후 알릴 의무

- (1) 운전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사유를 안 날로부터 10일안에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회사가 전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차액보험료를 환급할 수 있으며,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운전자, 보험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청구하였을 때
- ②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때

8-1 위법계약의 해지

- (1)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 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9. 보험료의 환급' '(2)'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5)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9. 보험료의 환급

-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된 때에, 무효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액을, 효력상실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나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 험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 보험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3)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 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드 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 험료만 돌려드립니다.

10. 사고발생시의 의무

- (1) 운전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때에는 지체없이 사고가 생긴 때와 곳, 상황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2) 운전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관계관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소환장, 구속영장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이나 구두에 의한 중요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회사에 알리고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 (1) 운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사고가 생긴 날로부터 30일안에 또는 회사가 승인한 유예기간안에 다음의 서류등 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나 증거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
 - ②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 ③ 진단서
 - ④ 법원의 판결문 사본
- (2) 회사는 운전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3) 회사는 위 (1)의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 지하여 드립니다.
- (5) 회사는 위 (3) 또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2. 가지급보험금의 청구

운전자는 약정한 보험가입금액의 50% 범위안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는 가지급보험금청구서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운전자 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 (1) 운전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14. 계약 내용의 제공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년식
- ②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할증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 ③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15. 분쟁의 조정

보험금의 사정, 지급 등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 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긴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 조정위원회에 맡겨 그 판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16.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보험금의 분담

'1.보상내용'의 '(2)'의 '①'과'②'에 대하여 적용 됩니다.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보험회사의 대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드린 경우에도 그 사고로 운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17.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18.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회사(점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19.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에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0.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릅니다.

〈별 표〉후유장애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해	보험가입금액				
등급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90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8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70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6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5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4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30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24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18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14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6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4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함

<부 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운전자보험 특별약관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단, 공동 인수 계약은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2) 제①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① 항 및 제②항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등으로 최고합니다. 서면으로 최고할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 (4) 회사가 제③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그 전자문서의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①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 (1) 이 특별약관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입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업종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계약자 명의의 결제수단에 한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보험계약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업종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및 전자금 융거래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해당 결제를 제공하는 회사 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 (1) 사고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 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2) 제(1)항의 사고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1. 유효기간이 지난 결제수단
 - 2. 위조.변조하거나 무효 또는 거래정지가 된 결제수단
 - 3. 보유자와 이용자가 상이한 결제수단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3)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1.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부상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담보특약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별표〉의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 표〉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1급	200만원	300만원
2급	167만원	250만원
3급	140만원	210만원
4급	120만원	180만원
5급	100만원	150만원
6급	87만원	130만원
7급	73만원	110만원
8급	60만원	90만원
9급	47만원	70만원
10급	40만원	60만원
11급	33만원	50만원
12급	20만원	30만원
13급	13만원	20만원
14급	7만원	1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고객정보 취급방침

KB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도 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5. 수익증권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은 KB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3.『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증권총액정보등(위 금융지주회사

법 제48조의2 제2항 참조)

ш. 고객정보의 제공처

KB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KB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KB국민은행(은행 및 외국환업), KB증권(금융투자업), KB소해보험(손해보험업), KB국민카드(신용카드업), KB생명보험(생명보험업), KB자산운용(집합투자업,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 KB캐피탈(리스, 할부금융업), KB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 KB부동산신탁(신탁업), KB인베스트먼트(투자및 융자업), KB신용정보(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KB데이타시스템(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현대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입니다.

皿.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KB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 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 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 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 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 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 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 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⑦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연1회 이상 통지 하는 등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 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 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 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 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 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 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B금융그룹

KB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KB국민은행	고객정보관리인	KB증권	고객정보관리인
KB손해보험	고객정보관리인	KB국민카드	고객정보관리인	kb라이프생명	고객정보관리인
KB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KB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KB부동산신탁	고객정보관리인
KB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KB인베스트먼트	고객정보관리인	KB데이타시스템	고객정보관리인
KB신용정보	고객정보관리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 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

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 🏗 1544 - 0114

·서면: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 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한 때 동의를 한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없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http://www.kbinsure.co.kr

. 서면 :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

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2 1544 - 0114

. 인터넷 : http://www.kbinsure.co.kr

. 서면 :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코리아크레딧뷰로㈜ :

☎ 02)708-6000 인터넷 www.koreacb.com

한국신용정보㈜ :

☎ 1588-2486 인터넷 www.mycredit.co.kr

.한국신용평가정보㈜ :

☎ 1600-1533 인터넷 www.creditbank.co.kr

바. 본인정보의 유출시 피해보상 요구

KB손해보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 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사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	02)6900-2114	(02)3702-8679	(국번없이)1332
- ス人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영등포구
주소	298, 9층 정보보호파트	종로5길 68	여의대로 38